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31
------------	-------

발의연월일 : 2018. 3. 28.

발의자 : 조정식 · 강훈식 · 윤관석

이학재 · 노웅래 · 안호영

윤영일 · 최인호 · 이원욱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고, 나아가 지역의 주요 자산이자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공공건축물은 최근까지도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못하고 지역의 역사성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특색없는 디자인, 과대·과다 시설, 기능 중복, 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권위적 공간 등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음.

이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의 부실한 기획에 주된 원인이 있는 만큼,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고 그 업무와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기획 개념의 도입(안 제2조)

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건축기획”으로 정의함.

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안 제4조)

개정안의 건축기획에 관한 규정을 타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함.

다. 건축기획 업무와 절차를 규정(안 제22조의2)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

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규정(안 제22조의3)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두되, 이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 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지역건축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사전검토 제도 내실화(안 제23조)

공공기관은 사전계획서의 내용 중 예산,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서의 재검토 및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안 제24조의2)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동 센터가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 중 건축기획에 관한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그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을 수행한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해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공공건축지원센터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한다. 제2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22조의2제2항”으로, “작성하고,”를 “작성하여”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건축지원센터에”를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로, “공공건축지원센터는”을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예산, 건축물등의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문 및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설계용역 발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

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승인 및 재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건축의 건축기획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
1. (생 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u>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u>
2. ~ 6. (생 략) ②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략) <u><신 설></u>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이 법 중 건축기획에 관한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u><신 설></u>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

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 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그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을 수행한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을 수

행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해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공공건축지원센터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신 설>

고시한다.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

	<p><u>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u>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u>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한다.</u></p>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u>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삭 제>

성하고,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
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공
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 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성하여 -----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
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
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이라-----

<작제>

<작제>

〈삭 제〉

< 산 제 >

<작제>

(3) _____

④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예
산, 건축물등의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공공건축

- ④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지원센터등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문 및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⑥ 제5항-----예산편성, 설계용역 발주-----

⑦ -----제6항까지-----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p><u>수 있다.</u></p> <p><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승인 및 재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31조(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 · 도지사 또는 <u>시장 · 군수 · 구청장</u>(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진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31조(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① ----- <u>시장 · 군수 · 구청장</u>-----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p>